

OCT 2022. Issue 167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아리랑*



The New Customs Study

05 ... WCO 친환경적인 HS를 위한 심포지엄



최신 관세 판례 분석

09 ...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 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논리로 푸는 HS 사례

12 ... CPU Cooler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6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1
비교 가능성 분석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19 ...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1 ... 과세환율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곁에 서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온 한국의 전통 민요입니다. 정선·밀양·진도 아리랑을 3대 아리랑으로 부르지만 장단·박자·가사가 서로 다른 60 여종 3600 여의 수많은 아리랑이 한국은 물론 우리 민족이 사는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아리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가사구절에서 의미를 찾자면 **아리다**는 **가슴앓이와 같은 앓다**로 **쓰리랑은 쓰라리다**와 연관이 지어집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시달려야 했고 외적의 침입에 쫓겨 다녔습니다.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아이들을 업고 걸리고 하면서 이 산골 저 바닷가로 끝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피난살이의 한이 응축된 것이 아리랑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WCO 친환경적인 HS를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CPU Cooler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 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1. 비교 가능성 분석’**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과세환율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던 냉전(Cold War)상황이 끝난 지 30여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세계는 하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국가 간의 적대적인 관계들이 상징적인 장벽의 붕괴와 함께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권, 영토, 자원, 종교, 이념 등의 갈등이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수면아래로 들어갔던 탐욕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경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은 불과 몇 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주위 사람들을 선동 시키고 조정하며 패거리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렇게 리더의 지위에 앉은 소수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는 매우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이 그렇지 않던가요?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등 재산과 물적인 피해 뿐 아니라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영토를 키워가려는 욕심이 발단이었습니다.

“적들이 해안에 상륙하자 피난민들이 내륙으로 몰려들었다. 거꾸로 내륙의 피난민들은 남쪽 물가를 향해 내려갔다. 양쪽의 피난민들이 길에서 마주쳐 서로 떠 나온 곳의 형편을 물었다. 피난처는 아무 곳에도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죽을힘을 다하여 어디론지 가고 있었다. 어디론지 가고 있다는 것만이 그들의 위안인 듯싶었다.”** (칼의 노래, 김훈, 2012년 (주)문학동네)

또다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지라도 그 상황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아픈 걸음을 얼마나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가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곁에 서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41)

또다시 위기상황이 왔어도 동행하며 함께 간다면 언젠가는 평안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린 가슴들에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키백과, 아리랑,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6%AC%EB%9E%91>

**김훈, 칼의 노래 (서울:문학동네, 2012), 48



The New Customs Study

WCO 친환경적인 HS를 위한 심포지엄

Symposia 개요

- 2027 년 HS 개정 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 HS 실현을 위해 WCO(세계관세기구) Symposia “**Visualising a Greener HS**” 세션 참석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Session 2 주제

“Visualising a Greener HS”의 두 번째 세션은 “**Chemicals – reflecting the good, the bad and the revolutionary**”(화학물질 - 좋은 것, 나쁜 것, 혁명적인 것의 반영)로서 2022년 10월 2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김태경

관세사

tk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1st Panel

WTO(세계무역기구) 시장 접근 부문 선임 고문 Roy Santana는 **“Greening the HS: What are the limits and the alternatives?”**(녹색 HS: 한계와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① 왜 녹색 HS인지(Why “green” the HS?)

국제무역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HS는 지난 30년 간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국제무역을 촉진시켰으며, 개정 시마다 녹색화되었기에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② 녹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What do we mean by “greening”?)

HS의 녹색화는 ㉠특정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움을 주는 물품 확인,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물품 확인, ㉡물품 최종 용도(end-use) 또는 수입자의 의도(intent) 확인을 의미합니다.

③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한지(Where do we currently stand?)

현재 HS CODE는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품목분류의 객관적 특성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내국소비세, 통계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과정 및 생산 방법, 최종 용도, 신품/중고품/리퍼비시물품(refurbished)/재제조물품(remanufactured)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What are the alternatives?)

녹색 관세행정에서 HS를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S 6단위를 넘어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자릿수의 사용 (예 - 민간 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의 내공성 인증 제도), ㉢ 수입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수입 후 관세 심사와 결합하여 "최종 용도"를 기반으로 수입 규제, ㉡ HS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제품 정의 (예 - ITA 부칙 B와 의약품 협정)

2nd Panel

- UNEP(유엔환경계획) 화학물질 전문가 Jacqueline Alvarez는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global mercury supply and trade”**(글로벌 수은 공급과 무역에 대한 더 나은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영세소규모금채광(이하 “ASGM”, Artisanal and Small Gold Mining)은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서 유독물인 수은을 이용하여 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로 인해 수은 배출이 증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 ASGM에 사용되는 모든 수은의 절반이 불법으로 거래됩니다. 불법 수은 무역을 위해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하여 서류 위조, ㉡문서 없이 서류 운송, ㉢이중 송장, ㉣허가받지 않은 입항지를 통한 밀수, ㉤통제되지 않은 물품의 선적 내 수은 위장 등 전략이 사용됩니다.
- 무수은(mercury-free) ASGM을 홍보하여 수은 수요를 감소시키고, 무역 규제 조직이 수은 공급부터 최종 사용 및 폐기까지 수은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수은 무역 관련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3rd Panel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의 Melisa Lim은 **“GLOBAL REGULATION OF HAZARDOUS CHEMICALS: MONITORING TRADE AND INCREASING TRACEABILITY USING THE HS”(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규제: 무역 모니터링 및 HS를 이용한 추적성 증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의 공통 목적은 위해한 화학물질 및 웨이스트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각 협약에 따른 수출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HS CODE를 통한 위해 화학물질 관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4th Panel

유럽세관 화학물질 분야 책임자 Hervé Schepers는 **“Toward a greener HS and a greener society, a EU perspective”(녹색 HS와 녹색 사회를 향한 유럽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①에틸알코올(Ethyl alcohol)과 에테르(Ethers)

에틸알코올은 중요하고 다용도적인 원료로서 자연적인 것(agricultural) 및 인공적인 것(syntheti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EU 규정은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HS에서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휘발유는 마른 알코올과 혼합되어 있으므로 마른 알코올과 젖은 알코올을 분리해야 합니다.

휘발유에 쓰이는 다양한 에테르(ETBE, MTBE, DME, THxEE 등)에 대해 다른 것과 품목분류 구분이 필요합니다.

②수소, 전기 에너지, 천연가스

친환경적인 녹색의 것과 다른 것의 품목분류 구분이 필요합니다.

③광물유(Mineral oils)

탄화수소(hydrocarbons)는 현재와 미래(예: 비행기)에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녹색이어야 합니다.

HS에서 바이오디젤은 잘 분류되었지만 순수 녹색 탄화수소에 대한 자체 HS 분류가 필요합니다. 가스 오일 및 연료 오일은 연소 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황(Sulphur) 함량에 따라 HS를 분류해야 합니다.

④화학 및 의약품

헬륨, HS에서 기타로만 분류되고 있는 희토류 금속 등 중요 원재료와 핵산(nucleic acids), 대마초와 그 천연물질(Cannabidiol)도 특정 HS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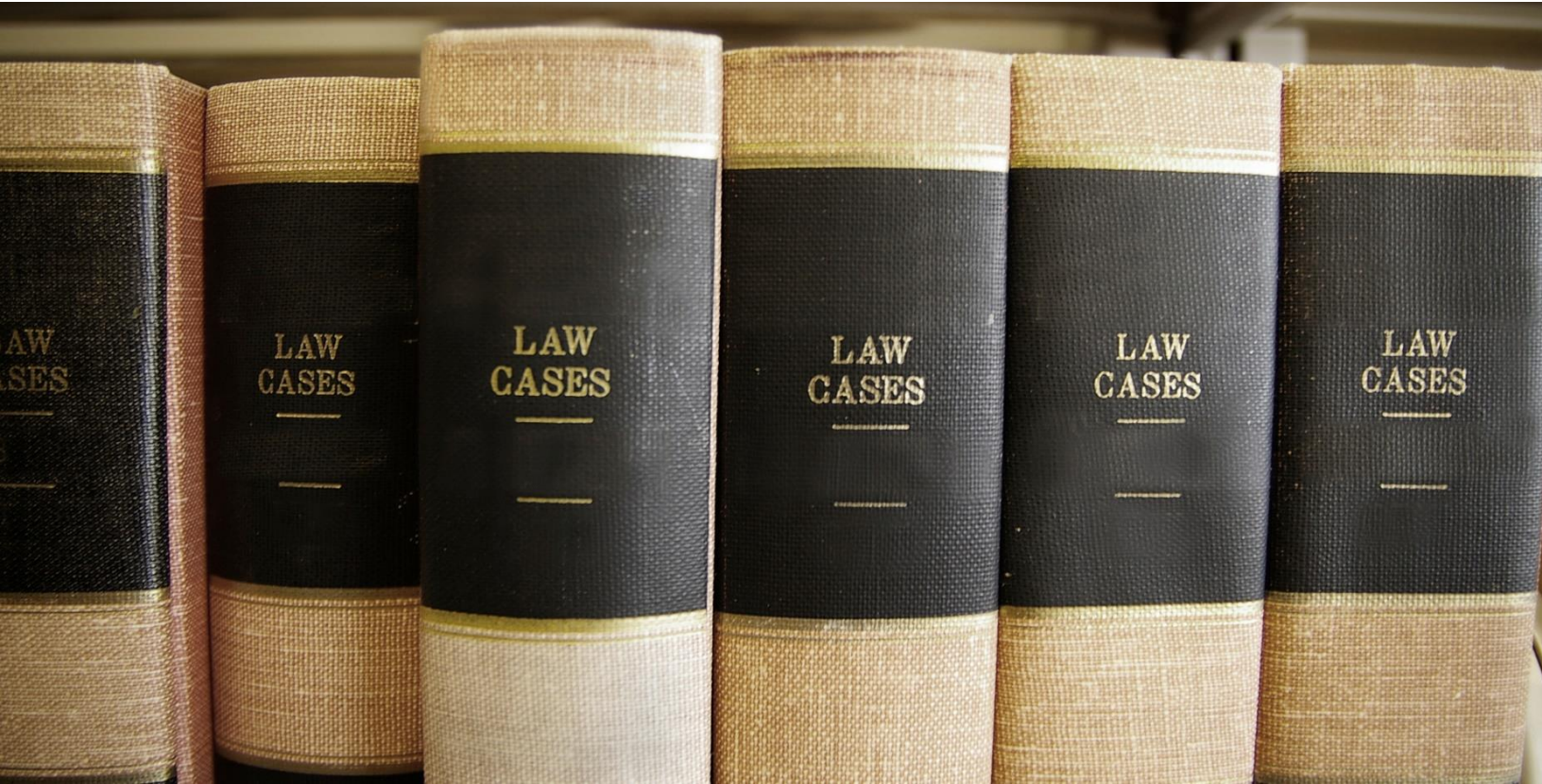
⑤중합체와 플라스틱

생체고분자(Biopolymers)와 관련하여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PE, PET, PA)는 HS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생분해성 고분자, 재생 고분자, 단량체, 천연 고분자 역시 HS 구분이 필요합니다.

⑥결론

현재 유럽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는 10만 개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3천 개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어를 요하고 있습니다.

HS 제38류 소호주 제1호 내지 제3호는 좋은 진전이었으나, 녹색 HS를 위해서는 1천 개 이상에 대해 분류가 필요합니다. 향후 화학물질 검사를 위한 세관 분석실은 필수적이고, 녹색 HS로의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9.4.2.부터 2019.12.27.까지 홍콩에 소재한 000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000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심은영

관세사

eysh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외국환거래 자문
- 무역거래 자문

나. 청구인은 2021.7.21. 및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유리 커버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부 내부에 이물이 유입되거나 외부의 스크래치로부터 화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고,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가장자리에 BM 인쇄 처리한 8mm 이하 두께의 강화유리에 TAC필름(AG·AR·AF 코팅 처리)을 압착하여 결합한 구조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렵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000세관장이 2021.9.2. 청구인에게 한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CPU Cooler 품목분류

1. 개요

컴퓨터의 두뇌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인 만큼 소비전력이 크고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CPU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작업 처리능력이 저하되고 고장에 이르기도 하므로 열을 식혀주는 냉각장치인 CPU 쿨러가 필수적입니다. CPU 쿨러의 대표적인 냉각 방식으로는 팬의 회전을 이용하는 공랭 방식과 냉각수의 순환을 이용하는 수랭 방식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CPU 쿨러의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2. 품목분류 사례

(1) 쟁점 HS CODE

HS	제8414.59-2000호	제8419.89-9020호
세율	기본세율 8% WTO협정관세 1.6%	기본세율 8%
호의 용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냉각기
요건	세관장확인대상(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없음

(2) 공랭식 쿨러의 품목분류 사례

① 품목분류 기존사례(변경고시 이전)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히트파이프, 방열판과 팬(Fan)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히트파이프 내에 냉매작용을 하는 액체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냉각장치로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4과-10561 (시행일자: 2019-08-05)]

② 품목분류 변경사례(변경고시 이후)

팬(fan)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컴퓨터 밖으로 방출시켜 열을 발산하는 쿨링팬에 주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14.59-200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관세청고시 제2022-13호, 2022. 3. 31.]

(3) 수랭식 쿨러의 품목분류 사례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 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수를 통해 냉각시키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4과-5056 (시행일자: 2020-07-27)]

3. 분류검토

(1) 공랭식 쿨러

변경고시 이전에는 팬이 히트파이프, 방열판 등과 결합되어 있고 냉매작용을 하는 액체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복잡한 기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8414호에서 제외하였으나,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는 해당 물품의 주 기능이 쿨링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414호 해설서에 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호의 용어에도 냉각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쿨링팬을 주 기능으로 하는 공랭식 쿨러는 제8414.59-2000호로 분류됩니다.

(2) 수랭식 쿨러

제8419호 해설서에서 온도 변화의 결과로 재료를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호의 용어에 냉각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냉각수를 통해 열을 냉각시키는 수랭식 쿨러는 기타의 냉각기로 보아 제8419.89-9020호로 분류됩니다.

4. 요건

제8414.59-2000호에 해당하는 송풍기, 전기냉풍기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이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CPU 쿨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계의 일부분으로서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라면 요건비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제8414.59-2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하는 경우 정격전압을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1. 비교 가능성 분석

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를 강타하여, 우리가 가졌던 상식과 생활방식은 물론 무역 및 관세분야 또한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37개 회원국의 합의된 견해를 수렴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전가격지침 (2020.12)'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이슈에 대한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및 적용,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해 관련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2017년 OECD 이전가격 지침(OECD TPG)은 적용되어야 하며, 1)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2)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 (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3) 정부지원 프로그램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mes),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황 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며, 이번 호에서는 비교 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 미 정

팀장/관세사

mjch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요건
- 통관 법률 자문

1) 동시대의 사용 가능한 정보 (Contemporaneous information)

원칙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이 비교가능성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동시적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기간 동안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 그 변화가 다른 판매 경로의 사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해에 발생한 판매량과 비교
- ✓ 다국적기업 그룹 및 통제된 거래 및/또는 독립 당사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용량 활용도 변화에 대한 분석
- ✓ 통제된 거래의 당사자(관련된 당사자 또는 관련 없는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가 부담하는 증가분 또는 예외 비용에 관련된 특정 정보
- ✓ 정부지원을 받은 정도 및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효과를 계량화하고 지원의 종류와 회계처리의 파악
- ✓ 통제된 거래의 가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 정부 개입에 관한 세부 사항
- ✓ 분기별 SEC 제출 또는 수익 발표와 같은 중간 재무제표의 정보
- ✓ 통제된 거래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범위 내에서 국가별 GDP 데이터 또는 중앙은행, 정부기관, 산업 또는 무역협회의 산업지표와 같은 거시경제 정보
- ✓ 특정 조건에서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를 기준으로 변동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귀 분석 또는 분산 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예: GDP 이동에 대한 특정 산업의 기업 이익의 반응)
- ✓ 매출, 비용 및 수익성과 관련된 내부 예산/예측 데이터의 실제 결과와 비교
- ✓ 과거 경기 침체기에 관찰된 수익성 또는 제 3 자 행동에 대한 영향 분석 또는 부분적이더라도 당해 연도에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사용

2) 예산재무정보의 활용 (Budgeted Financial Information)

코로나-19 특별상황에서의 수익, 비용, 마진등을 가늠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의 설정 시, 책정된 예산 또는 예측된 재무 결과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제된 거래상황의 재무결과는 납세의무 자가 코로나 19에 따른 재정적 영향(매출액 감소 또는 운영비 증가 등)을 평가하고, 계약조건 및 당사자의 위험부담과 내부가

격의 적정한 결과를 확정하는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이전의 변동성을 포함한 코로나-19 예산을 포함하는 이익과 손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
- ✓ 코로나-19 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가능한 수익 및 결과 (모든 요소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의 수익에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를 고려)
- ✓ 기능, 자산 및 리스크 사항을 고려하여, 통제된 거래에서 테스트대상의 비용할당 또는 매출의 감소(및 영업마진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 및 근거
- ✓ 통제된 거래에서 정부의 지원 또는 테스트 대상 회계처리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근거

3) 시기 (Timing Issues)

통제된 거래(controlled transaction)와 같은 기간 동안 수행된 비교 가능한 통제되지 않은 거래의 조건과 관련된 정보("통제되지 않은 동시의 거래")는 비교 가능성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거래순이익률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적용 시, 비교 가능성 분석의 일부로 동시적인 통제되지 않은 거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TNMM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상업 데이터베이스는 재무제표에서 파생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관련된 기간이 지난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제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전년도 재무정보를 기초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고,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이용가능한 현재의 연도정보를 활용하여 이전가격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TNMM의 모든 적용에 통제되지 않은 회계연도에 대한 동시 정보가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포괄하는 장기 약정이 시행될 수 있으며, 약정의 협상과 동시에 비교 가능한 자료에 기초한 정상가격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과 같이 당사자가 가정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습니다.

*출처: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 OECD 2020

관세사 차미정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1. 개요

2022년 8월 1일자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승헌

관세사

shha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관세청은 PSR 의 HS 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22.10.31.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1) 첨부된 파일의 시트 1 에 포함된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어 인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할세관장에게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인증만료일이 1 년 이내로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연장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1 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 기준의 세번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HS-PSR)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시트 2)
- (3)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 기준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HS 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관세청 FTA 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22.8.1.부터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HS2017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HS2017 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자율점검 후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과세환율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 이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의 상승
- 개정 후 현행 외국환매도율 기준 과세환율보다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국내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함



한 윤 호

관세사

yhha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품목분류

2. 개정 내용

-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관세법 제18조)
외국환매도율보다 아래로 설정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국내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임.
- 외국환매입률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6항)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매입률 또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됨. 이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출 및 수입환율은 동일한 값으로 산출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중개회사,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외국환매도율 및 매입률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로 주체가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 과세환율 대신, 외국환중개회사가 법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한 과세환율을 따름.

3. 시행 일자

2022. 09. 18

4. 개정 의견

급격한 달러 환율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고자 개정된 법령으로서, 무역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